

[붙임 1] 인사규정 제8조(결격사유) 및 인사관리규범 제12조(채용자격)에 의한 채용자격 및 결격사유 기준

[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(결격사유)]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
2. 공직선거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
3.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확정된 자
4. <삭제 2019.08.07.>
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을 적용 받는 자
6. 다른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[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사관리규범 제12조(채용자격)]

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1. 인사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2. 인사규정 [별표 1]*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3. 성범죄 가해 경력이 없는 자

*인사규정 [별표 1] 직급별 채용자격기준

직급	자 격 요 건
5급	1.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(학력, 경력 제한없음) 2. <삭제 2017.12.26.> 3. <삭제 2018.12.21.>